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2.9.10.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2년 8월 23일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12년 8월 28일
- 다. 상정일자 : 제171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2012년 9월 10일)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선우근

가. 제안이유

동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시행으로 기능10급을 폐지하면서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 정년퇴직 등으로 자연 감소한 인력을 사회복지담당공무원으로 정원을 대체하고, 승진 적체된 기능직 공무원 및 동일 직급 장기근속 별정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정원비율을 조정하여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것임.

나. 주요내용

- (1) 안 별표 2중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에서는 기능직 공무원 중 7급은 현행 19% 이내를 29% 이내로 10% 상향조정하고, 8급은 현행 36% 이내를 38% 이내로 2%를 상향 조정하고, 9급은 현행 31% 이내를 29% 이상으로 2% 하향조정하며 10급은 폐지함으로서 하위직급인 9급과 10급은 축소 또는 폐지하고, 상위직급인 7급과 8급을 대폭적으로 증원하였음.

(2) 안 별표 2중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서는 별정직 공무원 중 6급 상당은 현행 20% 이내를 27% 이내로 7% 상향조정하고 7급 상당은 현행 47% 이내를 40% 이내로 7%를 하향 조정함으로서 하위직급인 7급 상당을 축소하고 상위직급인 6급 상당을 증원하였음.

(3) 안 별표 3중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서는 마포구의 총 정원의 총수는 정무직 1명을 포함하여 1,269명으로 변동이 없고 기능직 237명에서 235명으로 2명이 감소하고 일반직 6급 이하가 951명에서 953명으로 2명이 증가하였음.

3. 검토보고 (전문위원 명금길)

동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의 개정으로 승진 적체된 기능직공무원 및 동일직급 장기근속 별정직공무원의 상위직급의 비율을 높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의 자연감소인력을 사회복지담당공무원으로 정원대체 하고자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도 저촉됨이 없고 우리 구 조례규칙 심의회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절차상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